

제58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6. 7. 21. (목) 15:00 ~ 19: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석 : 이순일 의장, 노재성 부의장, 김상배 평의원, 구형건 평의원, 김동근 평의원,
이준석 평의원, 임문채 평의원, 류동관 평의원, 오귀석 평의원, 최중원 평의원,
김준형 평의원
(불참 : 이동렬 평의원, 이삼구 평의원)

4. 의안

○ 심의사항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자문사항

- 2016학년도 교비회계 및 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5. 주요 회의결과

가. 심의사항 - 학칙개정(안)

○ 상정된 학칙 개정(안)은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만 제외하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다. 제49조 개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심의를 보류하되,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 또는 보완이 충분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의결하기로 결정하다.

-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박사과정 의무 이수학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박사과정 의무 이수학점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 본교의 석사과정 취득학점 인정제도가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타 대학들도 박사과정 이수학점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박사과정의 의무 이수학점의 축소가 본교에서 배출되는 박사들의 질과 경쟁력

<간서명 란>

의장



저하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런 문제는 타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나 전문 학위 소지자가 학술박사 학위로 진학하는 경우에 특히 두드러질 수 있음.

- 지도교수 1인이 추가이수 과목을 지정하도록 하면 동일 학과 내에서도 박사과정 학생 간의 과목이수 편차가 커져 체계적인 박사학위 양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추가이수 과목 지정과 관련된 학교 차원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거나, 지도위원회 같은 시스템을 통해 지정과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도교수 지정과목의 이수와 관련하여 하위 규정인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위 규정인 학칙이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규정 간 체계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함.

[주요 개정내용]

- 제4조(기구) : 드론개발시험센터, 아주중개오믹스센터 신설
- 제8조(대학원) : 특수대학원 전공명 변경
- 제43조(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및 트랙) : 특수대학원 트랙 운영 근거 신설, 컴퓨터공학 전공과 사이버보안전공은 상호간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금지 반영
- 제53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 특수대학원 학위기에 트랙명 기재 근거 신설
- 제54조(학사과정의 학위수여) : 학사과정 학위기에 융복합트랙 이수결과 기재 근거 신설
- 제56조2(학점은행제 운영) : 학점은행제 운영근거 신설

자세한 사항은 6차, 하계 임시 교무회의 회의록 참조

나. 자문사항

○ 2016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1) 보고사항

- 기획처장이 2016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안)을 설명함

2) 자문사항 (※자문의견서 참조)

- 교비회계 규모가 적절한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임.
 - 물가는 2010년 대비 9.9% 상승한 반면 자금총계 증가는 7.12%로 약 2.8% 차이가 있음. 이는 2010년 수준의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것보다 64.5억 원 가량 자금이 부족 함을 의미함.

<간서명 란>

의 장

-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2010년 대비 불과 2.34% 증가했음. 이는 대략 93억 원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증가가 있어야 2010년 이래의 물가상승을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 목표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수입 감소에 상응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대학은 심각한 재정적 곤란을 피할 수 없음. 지난 몇 년간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로 등록금 수입 증가 부족분을 메우고 있으나 CK-II 사업 탈락으로 인해 국고지원이 10억 원 감소한 것에서 보듯이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 자금수입(지출) 총액의 성장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적인 대학의 발전에 어떤 문제를 초래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국고지원 사업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록금 수입의 영구 감소를 의미하는 입학정원 축소가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인지 대학 차원의 논의가 요구됨.
- 또한, 장기적으로 대학재정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확대 또는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대학 차원에서 수립할 것을 요청함.
- 대학이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에 곤란을 겪는 상황에서 개별 부서의 기금 적립액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표한 대학평의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 대학 전체의 절박한 필요성에 맞추어 가용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위기 상황이 지난 후에 적절하게 기여 부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함.
- 수업료 수입이 10억 원 가량 감소하였고, 이는 평균등록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120명의 학부 재학생 수 감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있었음. 4월 1일 기준으로 2015 학년도 대비 2016학년도 재학생 수는 374명이 감소함
- 2016학년도 재학생 수는 그대로 2017학년도 학생 수의 바탕이 되므로 학년별 학생 수 감소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학생 수 감소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요구됨.
- 운영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및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과 이런 항목들의 재정목표 비율 등은 대학 현황에 대한 실효적 논의를 위해서 본교와 의대를 구분하여 작성해줄 것을 요청함.
- 2016년 1차 추경예산의 운영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본교와 의대가 각각 43.4%와 72.4%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
- 운영수입대비 인건비항목의 재정목표 비율은 8개 주요 사립대학의 운영수입대비 보수 비율의 평균 47.7%을 참조한 것임. 그러나 비교 대학들의 규모(학생수)가 우리와 큰

<간서명 란>

의 장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48%라는 재정목표는 재검토가 요구됨.

- 규모가 비슷하며 의대가 없는 서강대와 아주대(본교)의 운영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은 2015년 결산 기준 각각 41.4%와 48.1%로 본교 경우가 지나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런 인건비 비율 차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됨.
- 전체 75.9%인 법정부담금의 법인부담 비율도 의대와 본교를 나누어 보면 큰 차이가 있음. 의대 경우에는 법정부담금의 100%인 37.15억 원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였음. 이와 달리 본교에는 법정부담금 51.77억 원의 58.5%만 법인에서 전입되며 부족한 21.49억 원은 교비로 충당됨. 법인이 본교의 법정부담금을 모두 전입하지 않는 것은 반복되는 문제임. 본교 법정부담금의 법인부담 비율을 의대와 구분해 파악하고, 본교에도 실제 100% 전입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 법인에서 교비회계로 전입된 총액은 91.97억 원이며, 이를 재원으로 나누어보면 병원에서 임대사업 수익을 법인으로 전출한 46.18억 원과 나머지 45.79억 원으로 구분됨.
- 병원에서 광교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에 전출한 38.57억 원을 고려하면 법인에서 실제 추가 전입한 것은 7.22억 원으로, 이는 장례식장을 포함한 법인 수익사업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됨. 이로부터 유추하건데 법인의 수익 총액이 28.71억 원 이상이면 본교 뜻 법정전입금 부족분 21.49억 원의 추가 전입이 가능할 것임. 좀 더 현실적인 추정으로 광교 사업과 관련한 추가 자금 집행 30억 원을 가정하면 법인수익 총액이 58.71억 원 이상일 때 법정전입금 100% 부담이 가능함.
- 부속병원전출금과 법인전입금의 산출과 회계 간 정리가 명확하지 않음. 법인으로부터 본교로의 경상비 전입은 2.38억 원으로 부속병원이 본교 지원을 위해 법인에 전출한 9.26억 원이 포함되지 않음. 교비회계 법정부담전입금 30.30억 원에 9.26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부속병원이 송재관과 관련한 제비용에 약간을 더한 규모로 본교를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법인으로 전출한 9.26억 원을 취지에 맞게 그대로 교비회계에 경상비로 전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임.
- 부속병원이 전출한 본교 지원금 9.26억 원이 경상비전입금이 아닌 법정부담전입금 30.30억 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함. 9.26억 원은 경상비전입금이 되어야 하며, 잘못 포함된 법인의 법정부담금전입금에서 빼져야 함. 다시 말해 법인은 부속병원의 본교지원금 9.26억 원과 별도의 재원으로 법정전입부담금을 내야함. 본교 지원을 위해 부속병원에서 추가적인 전출(교비회계로는 경상비 전입)을 하기로 합의를 하기 전에도 법인은 지금과 유사한 비율로 본교의 법정전입금을 부담하고 있었음.
- 1차 추경예산(안)의 법정부담전입금 30.30억 원에서 9.26억 원을 빼면 법인의 실제 법정전입금은 21.04억 원으로 감소하며 부담 비율도 40.6%로 줄어들게 됨. 30.30

<간서명 란>

의 장

▲

억 원이 모두 법정부담전입금이라는 주장은 법인의 부담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부속병원이 본교 지원을 위하여 전출한 9.26억 원을 법인이 본교에 전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전출을 유보했다는 의미가 됨. 동시에 기대했던 9.26억 원의 경상비전입금 수입이 교비회계에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임.

- 의대 경우에는 법인이 본교에 대신 전입한 송재관 관련 비용 9.26억 원과 법정부담금 전입 37.15억 원을 더한 46.41억 원(임대사업 수익 법인 전출 46.18억 원과 거의 동일) 외에 경상비 전입금 22.14억 원을 추가로 전입 받은 것에 해당함. 경상비 전입금 중 22.00억 원은 법인이 매년 장례식장 수익에서 병원(의대)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임.
- 병원을 중심으로 보면 법인에 84.75($46.18+38.57$)억 원을 전출하는 대신에 의대가 법인으로부터 68.55($37.15+22.00+0.14+9.26$)억 원을 전입 받았음. 반면에 실제 본교가 법인에서 받은 전입금은 23.42($2.38+21.04$)억 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이번 1차 추경예산에는 캠퍼스플라자에 아주연구마을사업을 위한 공간조성비 1.2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 연구마을사업을 2년 간 수행하면 약 5.1억 원의 이익이 예상된다는 기획처의 운영수지 분석 결과는 공간조성비 지출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함.
- 그러나 16.23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캠퍼스플라자 4개 층을 개조하여 행정부서들이 이전한 후에 불과 3년 만에 다시 교내로 재이전한 사례가 있기에 공간의 용도 변경과 공사비 투입에 신중할 것을 요청함.
- 공간임대는 연구와 교육을 최우선에 두고 공간 사용의 효용성을 검토한 후에 고려하며, 적절한 수익모델을 가지고 추진하되 운영수지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임대 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의 변경 및 상태 유지와 임대 종료 후 복원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권고함.
- 아주연구마을사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계기로 창업보육센터도 캠퍼스플라자로 이전하고, 산학협력원은 교육 및 연구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공간을 용도에 따라 교육, 연구, 행정,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면 불필요한 공간 조성 공사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임. 특히 연구공간들도 성격에 따라 습식과 건식, 배기 시설 유무 등의 요구 조건이 다르므로 몇 개 유형으로 나누어 배정하고 관리할 것을 권장함.
- 기부금 수입의 학기 별 편차를 감안해도 기부금 수입 실현 현황이 본교 26.5%, 의대 12.5%로 예산대비 진행률이 너무 낮음
- 38.40억 원을 기대했던 본교의 지정기부금 수입은 지금까지 20.7%인 7.96억 원만 실현됨. 결산 시점에 다가가 진행이 저조한 예산 항목들을 발견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곤란함.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항목별 예산 대비 진행률을 점검하는 체제의 구축이

<간서명 란>

의
장

필요함.

- 본교 기부금 수입이 크게 늘지 못하는 까닭은 총장 임기인 4년 주기로 새로운 기부자들을 발굴하는 반면에 기존 기부자들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한 번 인연을 맺은 기부자들이 계속 본교에 기부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소송 관련 제반 비용을 등록금 회계에서 비등록금 회계로 돌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원칙적으로 소송 관련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음.
- 모든 소송의 피고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임. 대학이 피고 당사자가 아닌 소송의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임. 이는 현행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위배될 소지가 큼. 특히 해임처분의 경우에는 인사권을 행사한 주체인 법인이 소송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함.
- 소송 관련한 제반 비용의 부담자로서 법인은 각 소송이 부주의 또는 불합리한 의도를 가진 업무처리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엄밀히 검토하고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함.
- 지난 번 본예산 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예산 안에도 어떤 대학운영 목표가 담겨 있는지 뚜렷하게 들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영혼이 담긴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총론적 평을 참조하기 바람

○ 2016학년도 부속병원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1) 보고사항

- 기획조정실장이 2016학년도 부속병원회계 1차 추경(안)을 설명함

2) 자문사항 (*자문의견서 참조)

- 2016학년도 병원회계 본예산 자문에서 ‘운영상태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비회계와 같이 주요 지표의 변화를 연도별로 제시할 것을 요청’ 한 것을 수용하여 주요 경영실적 그래프를 준비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향후에는 경영실적 그래프가 나타내는 의미에 대한 해설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함. 또한 중요한 지표들에 대해 재정운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얼마나 근접해가고 있는지 연차별 달성을 정리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금년 의료수익 대비 재료비율은 33.5%로 타 대학병원 재료비율 수준인 연대 33.7%, 고대(안암) 33.7%, 카톨릭 33.2%, 아산 33.6%와 유사한 수준이고, 그 값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간서명 란>

의 장

- 단, 2015년도 결산 기준 의료수입은 4,214억 원으로 의료수익 대비 재료비율의 1% 차이는 대략 42억 원의 증감을 초래함. 이를 고려해 재료비율의 책정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해외학술지원금’과 ‘연구비’ 미집행 23억 원 정도는 재료 비율 결정에 따라 예산 배정 여부가 좌우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임. 병원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는 타 사업들의 경우에도 필요한 예산이 비슷한 규모라면 마찬가지로 재료 비율 책정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임.
- 전기이월자금은 본예산 205.3억 원에서 1차 추경예산 461.6억 원으로 256.3억 원 증가하였고, 차기이월자금은 본예산 172.0억 원에서 1차 추경예산 305.6억 원으로 133.6억 원 증가함.
 - 이월자금 변동성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교비회계에서는 이월되는 자금의 원래 용도를 밝히고 차기에 목적 그대로 사용하는 명시이월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 병원회계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예산 책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강력히 권고함.
 -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이월자금의 규모가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해외학술지원금, 연구비, 인력 충원 등과 같이 필요한 예산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자금을 이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법인으로 전출한 ‘부속병원전출금’ 84.75억 원은 ‘임대사업전출금’ 46.18억 원과 ‘광교사업관련 전출금’ 38.57억 원의 합임. ‘임대사업전출금’은 수입원이 명확하므로 근거가 뚜렷함. 반면에 ‘광교사업관련 전출금’은 책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타당성에 대한 자문이 곤란함. 광교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646억 원(1차 100억 원 + 2차 546억 원)의 원리금 변제 및 법인자금 투입에 따른 상실이자소득 대체 등 제 항목을 모두 포함한 ‘연차별 광교사업관련 자금 전출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평의원 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임대사업전출금’ 46.18억 원은 의대 법정전입금 37.15억 원과 송재관 관련 경상비전입금 9.26억 원의 합인 46.41억 원과 대략적으로 일치함. 이는 지출 관점에서 자금 이동을 살핀 것으로 금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의대 법정전입금 및 송재관 관련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추가분을 충당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송재관 제비용을 9.26억 원으로 정액 계상하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음.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법인에서 의대에 전입하는 22억 원도 정액으로 계상되므로 동일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자금의 흐름은 ①병원에서 법인으로 간 임대사업전출금 46.18억 원에 ②법인이 장례

<간서명 란>

의 장

식장 수익배분 22억 원과 기타경상비 0.37억 원을 더해 ③68.55억 원을 교비회계에 전입하며, ④이 중 9.26억 원이 송재관 제비용의 명목으로 본교에 배정되며 ⑤나머지 59.29억 원은 의대에 배정됨. 위에서 지적한 정액으로 반영되는 항목들을 포함하여 이런 자금 흐름이 부속병원과 대학의 입장에서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광교사업관련 전출금’ 38.57억 원 중 ①20억 원은 2차 기채 546억 원을 13년(2년 거치 11년 상환) 동안 상환하는 계획을 중증재활요양병원 수익만으로는 이행하기 어렵기에 미리 병원에서 전출 받아서 적립하는 용도이며, ②10억 원은 1차 기채 100억 원을 10년 동안 원금 균등 상환하기 위한 것이고, ③8.57억 원은 법인이 예금으로 보유해 온 기금 199억 원을 처분함에 따라 얻지 못하는 이자수입 손실 보전 및 1차 기채 100억 원의 이자비용이란 설명을 본예산 자문을 하는 대학평의원회 자리에서 청취하였으나, ‘연차별 광교사업관련 자금전출 계획’ 없이는 부속병원회계가 부담하는 총 비용 및 이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법인의 이자수익 결손과 장례식장을 포함한 법인 수익 사업체들의 수익 증가가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장기적인 전망이 곤란함.

※ 별첨: 자문의견서

<간서명 란>

의 장

8

2016. 07. 21.(목)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의 장 이순일

(서명) 

부의장 노재성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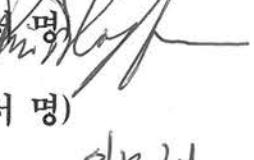
평의원 김상배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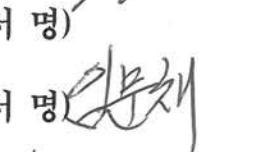
평의원 구형건

(서명) 

평의원 김동근

(서명) 

평의원 이동렬

(서명) 

평의원 임문채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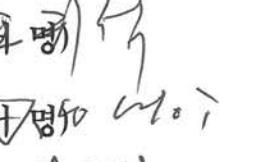
평의원 류동관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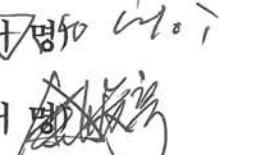
평의원 이준석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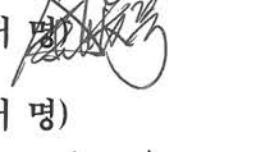
평의원 오귀석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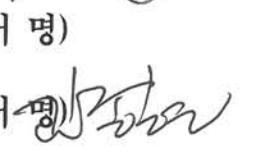
평의원 최중원

(서명) 

평의원 김준형

(서명) 

평의원 이삼구

(서명) 

간 사 김종현

(서명) 